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25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판 결

| | |
|---|---|
| 사 건 | 2020고정604 저작권법위반 |
| 피 고 인 | 주식회사 A |
| 검 사 | 최민준(기소), 정민섭(공판) |
| 변 호 인 | 변호사 신한솔 |
| 판 결 선 고 | 2021. 4. 13. |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A 설계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C'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D'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7. 11. 17.경, 2017. 12. 20.경, 2018. 1. 16.경, 2018. 5. 23.경 총 5회에 걸쳐 위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18, 26, 34)

1. SW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형원 _____